

우석대학교 자율학기제운영규정 제정 사유서

1. 제정 규정 명칭

제정	○ 자율학기제운영규정
----	-------------

2. 개정사유

- 학생의 교육 수요 및 대외 교육 환경의 급변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자율학기제운영규정을 제정하고자 함

3. 붙임

제정	○ 자율학기제운영규정
----	-------------

자율학기제운영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우석대학교 학칙 제11조제3항 자율학기제(이하‘자율학기’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자율학기”는 열린 교육환경과 전공 특성, 비전 및 진로탐색 등을 고려하여 학년별로 다양한 학기제(청춘학기, 연구학기 및 창업학기 등)를 마련하여 학생들이 자기주도 학습을 통해 창의융합적 사고를 함양할 수 있는 학기를 말한다.

제3조(운영) 정규수업 병행과 한 학기 몰입 형태로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신청 및 심의) ①신청을 원하는 학생은 정해진 기간에 자율학기 신청서 및 이수 계획서를 작성하고 지도교수 및 학과(부)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교무학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교과목으로 학점인정을 받고 싶은 경우에는 해당 과목 담당교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교무학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자율학기 승인은 집중이수제운영위원회의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제5조(지도교수 선정 및 역할) ①자율학기의 지도는 소속학과(부)의 지도교수가 하여야 한다.

②지도교수는 학생이 신청한 자율학기를 이수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6조(신청 영역) ①자율학기는 전공, 학습자 특성, 학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할 수 있다.

1. 청춘학기(두드림학기, 학습증진학기, 진로설계학기)
2. 연구학기(프로젝트학기)
3. 창업학기(실습학기)
4. 그 밖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기간) ①자율학기 기간은 재학 중 최대 2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②자율학기 이수 기간은 해당 학기 최소 15주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무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자율학기제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수 기간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8조(등록금의 납부 및 경비) 등록금은 전액 납부하며, 자율학기에 필요한 경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제9조(수강신청) 신청서 제출을 통해 최종 승인된 경우 수강신청 기간에 교무학사팀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한다.

제10조(학점인정 범위 및 성적) ①자율학기 학점인정을 통한 학수구분은 교양, 전공, 자유선택등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인정학점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1. 학점인정의 범위는 1학기 최소 3학점 최대 18학점으로 한다.
2. 자율학기로 취득할 수 있는 총 학점은 36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③성적표기는 P/F로 표시한다.

제11조(학점인정 절차) ①자율학기 학점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학과와 동일한 학사일정으로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1. 학생은 학기 8주차에 자율학기 중간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의 평가를 받고 교무학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학생은 해당학기 15주차에 자율학기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의 평가를 받고 교무학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교무학사팀은 자율학기제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인정받은 학점을 반영한다.

제12조(성적 및 성적증명서 표기) ①성적은 일반학과와 동일하게 적용되며, 석차 대상자에서는 제외된다.

②해당 학기 몰입형은 ‘청춘학기’, ‘연구학기’, ‘창업학기’등으로 표기한다.

③해당 학기 정규수업과 병행할 경우는 ‘자율창의학습1’, ‘자율창의학습2’, ‘연구학습1’, ‘연구학습2’, ‘창업학습1’, ‘창업학습2’등으로 표기할 수 있다.

제13조(세부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